

(주)화신 2020년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동 보고서 내 지배구조 관련 현황은 2020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별도 기재하였습니다. 보고서 내 지배구조 관련 활동 내역의 경우 공시대상기간(2020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의 내용을 기재하였고, 가이드라인에서 별도 기간을 제시한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한 내역을 기재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목 차

I. 개요	3
II. 기업지배구조 정책	4
1. 기업지배구조 정책	4
1) 지배구조 원칙과 정책	4
2) 지배구조 조직도	4
3) 지배구조 특징	5
2. 주주	6
1) 주주의 권리	6
2) 주주의 공평한 대우	10
3. 이사회	12
1) 이사회 기능	12
2) 이사회 구성	15
3) 사외이사의 책임	20
4) 사외이사 활동의 평가	21
5) 이사회 운영	22
6) 이사회 내 위원회	25
4. 감사기구	26
1) 감사위원회	26
2) 외부감사인	31

1. 개요

1. 기업명 : 주식회사 화신

2. 작성 담당자 : [정] 김종필 책임

[부] 이준성 선임

3. 작성 기준일 : 2020년 12월 31일

4. 기업 개요

최대주주 등	글로벌오토트레이딩 외 16명	최대주주 등 지분율	50.41%
		소액주주 지분율	43.87%
업종(금융/비금융)	비금융	주요 제품	자동차용 Chassis류 Cross Member, Arm류 등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해당여부	미해당	공공기관운영법 적용대상 여부	미해당
기업집단 명	-		
요약 재무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20년	2019년	2018년
연결 매출액	10,855	11,643	10,758
연결 영업이익	(113)	19	(211)
연결 당기순이익	(542)	66	(571)
연결 자산총액	8,227	8,084	8,282
별도 자산총액	6,412	6,115	6,262

2. 기업지배구조 현황

1. 기업지배구조 정책

1) 지배구조 원칙과 정책

- 당사는 주주가치 제고 및 권익 보호를 위해 투명경영 강화 및 윤리적 기업문화 형성을 위한 지배구조를 갖추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정관 및 내부감시장치, 이사회 운영사항, 임원의 구성 등의 내용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을 통해 공개하여 지배구조운영방식에 관해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 주주총회의 소집 및 결과, 사외이사의 선임 및 해임 등을 지체없이 공시하고 있습니다.
- 감사위원회 운영을 통해 회사경영사항에 대한 감시를 수행하고 내부통제운영실태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운영은 직무 규정을 통해 운영되며 회사에 대하여는 정보제공 의무를, 감사위원에게는 자료요청 및 자문용역 요청 등의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가 경영진에 대한 실질적 기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사회 및 이사회 내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독립성과 투명성을 견제 강화하고 있습니다.
- 또한, 당사는 구성원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안정적 지배구조를 구현하고자 회사의 의사결정과 업무집행을 이사회와 경영진에 각각 별도로 위임하고 경영진의 업무집행 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이사회가 경영진의 견제 기능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이사회 내 사외이사는 4분의 1이상으로 할 것을 정관에 명시하고있습니다.
- 위와 같은 제도와 장치를 통해 이사회 · 경영진 · 사외이사 모두가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갖추도록 지배구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 지배구조 조직도

이사회		감사위원회
사내이사: 2인 정서진 사장 장의호 부사장	사외이사: 3인 박경환 사외이사 김영석 사외이사 배성호 사외이사	감사위원: 3인 박경환 감사위원 김영석 감사위원 배성호 감사위원

3) 지배구조 특징

(1)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 구성

당사 이사회는 회사의 최고 상설 의사결정기구로서, 회사의 중요 의사결정 사항에 참여하고 대표이사 선임 및 해임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총원 5명 중 사외이사는 3명(전체 구성원 대비 60%)으로 법상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2) 이사회 내 위원회 중심의 운영

이사회 내 위원회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이사회 내 감사위원회 전문성 강화

감사위원회는 회계사로 회계법인 경력과 회계학전공 교수인 배성호 사외이사, 법률전문가인 박경환 사외이사, 자동차산업과 밀접한 기계공학전공 교수인 김영석 사외이사를 선임하여 회계, 법률, 자동차산업 전문가로 구성하여 경영진에 대한 견제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4) 지배구조 현황

구분	구성 (사외이사/ 구성원)	의장	주요 역할
이사회	3/5	정서진	① 상법상 이사회 의결 사항 - 주주총회의 소집 - 대표이사 선임 및 해임 -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등 ② 회사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 - 주요 자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등 - 자회사 자본 출자 및 채무 보증 승인 - 연간 사업계획의 승인 ③ 기타 법령 또는 이사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

감사 위원회	3/3	박경환	① 이사 및 경영진 업무 감독 ② 외부감사인 선정에 대한 승인 ③ 회사 및 자회사의 업무, 재산상태 조사 ④ 감사보고서 작성 ⑤ 내부회계관리 시스템 감사 ⑥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등
-----------	-----	-----	-------------------------------------------------------------------------------------------------------------------------------

2. 주주

(핵심원칙 1) 주주의 권리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세부원칙 1-④) 기업은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1) 주주의 권리

(1) 주주총회 관련 정보 제공

당사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를 운영 중입니다. 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소집되며,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됩니다. 상법 제362조에 따라 주주총회는 이사회 결정으로 소집되며, 이사회 결정일 당일 한국거래소 공시를 통하여 주주총회 일정 및 장소를 공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주총회 개최 2주 전에 의안 내용과 함께 소집통지서 발송과 소집공고를 실시하여 주주들이 주주총회 의안에 대해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분	2020년	2019년	2018년
	정기주주총회	정기주주총회	정기주주총회
소집결의일	2021.3.3	2020.2.25	2019.2.26
소집공고일	2021.3.15	2020.3.4	2019.3.6
주주총회개최일	2021.3.30	2020.3.19	2019.3.21
공고일과 주주총회일 사이 기간	15일	15일	15일
개최 장소/지역	경북 영천시 / 화신 기술연구소		

주주총회관련 사항	전체 주주 소집통지서 발송		
주주통보 방법	금융감독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등		
이사회 구성원 출석 여부	5명 전원 출석	6명 전원 출석	6명 전원 출석
감사위원회 출석 여부	3명 전원 출석	3명 전원 출석	3명 전원 출석
주주발언 주요 내용	발언주주 : 4인	발언주주 : 4인	발언주주 : 6인
	각 의안별 의견발언	각 의안별 의견발언	각 의안별 의견발언

(세부원칙 1-②)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주주의 의결권 행사관련

당사는 현재 서면투표제를 도입하고 있지는 않지만,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등을 통해 보다 원활한 주주의 권리행사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내 전자투표를 시행하지 않았으나,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원활한 주주의 권리행사를 위해 도입할 예정입니다. 최근 공시대상기간 주주총회 의안별 찬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제46기 정기주주총회 (2021.03.30)

의안	구분	회의목적사항	가결 여부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수	의결권행사 주식수	찬성주식수	
						반대, 기권 등	
제1호	보통	제46기 재무제표 승인	가결	32,924,810	16,727,891 (50.8%)	16,700,642 (99.8%)	
						27,249 (0.2%)	
제2호	특별	정관 일부 변경	가결	32,924,810	16,727,891 (50.8%)	16,727,891 (100.0%)	
						0	
제3호	보통	이사 보수 한도 승인	가결	32,924,810	16,727,891 (50.8%)	16,727,891 (100.0%)	
						0	

: 제46기 외국인 의결권 대리행사를 통해 일부 의안에서 기권 의견이 있었습니다. 상정된 의안 모두 원안대로 승인되었습니다.

② 제45기 정기주주총회 (2020.03.19)

의안	구분	회의목적사항	가결 여부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수	의결권행사 주식수	찬성주식수
						반대, 기권 등
제1호	보통	제45기 재무제표 승인	가결	32,924,810	16,962,596 (51.5%)	16,934,000 (99.8%)
						28,596 (0.2%)
제2호	특별	정관 일부 변경	가결	32,924,810	16,962,596 (51.5%)	16,384,146 (96.6%)
						578,450 (3.4%)
제3호	보통	이사보수 한도 승인	가결	32,924,810	16,962,596 (51.5%)	16,962,596 (100.0%)
						0

: 제45기 외국인 의결권 대리행사를 통해 일부 의안에서 반대, 기권 의견이 있었습니다. 상정된 의안 모두 원안대로 승인되었습니다.

③ 제44기 정기주주총회 (2019.03.21)

의안	구분	회의목적사항	가결 여부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수	의결권행사 주식수	찬성주식수
						반대, 기권 등
제1호	보통	제45기 재무제표 승인	가결	32,924,810	17,545,032 (53.3%)	17,506,507 (99.8%)
						38,525 (0.2%)
제2호	특별	정관 일부 변경	가결	32,924,810	17,545,032 (53.3%)	17,545,032 (100.0%)
						0
제3호	보통	이사 선임의 건	가결	32,924,810	17,545,032 (53.3%)	17,006,090 (96.9%)
						538,942 (3.1%)
제4호	보통	감사위원 선임의 건	가결	24,110,727	8,730,947 (36.2%)	8,192,005 (93.8%)
						538,942 (6.2%)
제5호	보통	이사보수 한도 승인	가결	32,924,810	17,545,032 (53.3%)	17,545,032 (100.0%)
						0

: 제44기 외국인 의결권 대리행사를 통해 일부 의안에서 반대, 기권 의견이 있었습니다. 상정된 의안 모두 원안대로 승인되었습니다.

(세부원칙 1-③) 기업은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주주제안권 관련 사항

- 주주제안 절차 안내 및 내부 규정 여부

최근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과거 주주제안권이 행사된 바가 없으며, 주주제안 절차에 대한 안내 및 내부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향후 홈페이지를 활용한 주주제안 절차 안내 및 주주제안 처리 내부 기준 수립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입니다.

- 당사는 주주총회 시 방해 의도가 명백한 경우 및 질의가 중복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주가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어떠한 제한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세부원칙 1-④) 기업은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마련하고 이를 주주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4)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당사는 정관 제46조에 의거하여 금전,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이익을 배당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배당을 실시하고 있으며, 배당가능이익 및 회사의 실적, 잉여현금흐름 및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으로 주주 환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당관련 사항을 정기주주총회 2주 전까지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현금, 현물 배당결정 공시' 및 우편통지 방식으로 공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배당에 관한 사항을 전자공시시스템 및 우편 통지를 통해 주주에게 안내하고 있으나, 중장기적 배당정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있지 않습니다.

향후 배당정책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원칙 1-⑤)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에 근거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 등을 받을 주주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5) 주주환원 전반에 대한 사항

① 최근 사업연도 배당현황

구분	주식 종류	액면가	주당 배당금	총 배당금 (백만원)	시가 배당률	액면 배당률
2020년	보통주	500원	50원	1,646	1.5%	10%

2019년	보통주	500원	50원	1,646	1.6%	10%
2018년	보통주	500원	25원	823	1.0%	5%

② 최근 사업연도 배당관련 기타 사항

당사는 최근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분기 및 중간 배당은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6) 적절한 수준의 주주환원을 받을 권리가 존중되고 있는지 여부

당사는 주주가치의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배당을 실시하고 있으며 배당가능이익 및 회사의 실적, 잉여현금흐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업연도 중 외부 변수로 인한 적자상황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배당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주주환원에 대한 주주의 권리를 존중하고 이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핵심원칙 2) 주주의 공평한 대우

주주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받아야 하고,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세부원칙 2-①) 기업은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2) 주주의 공평한 대우

(1) 주식발행 현황

정관상 발행 가능한 주식의 총수는 보통주 80,000,000주이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가 발행한 보통주는 34,920,410주입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유통주식수는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 1,995,600주를 제외한 32,924,810주입니다.

(2) IR개최 현황

당사는 수시로 투자자 및 애널리스트의 기업방문, 컨퍼런스콜, 컨퍼런스 참석을 통해 IR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등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대면 미팅을 제외한 컨퍼런스콜 위주로 IR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3) 홈페이지상에 공시담당부서 연락처 공개여부

당사 홈페이지상에 IR 담당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를 안내하고 있으며, 회사 대표번호를 통해서도 담당자와 유선 연결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http://www.hwashin.co.kr/kr/invest/invest_ir_1.do으로 접속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4) 외국인 주주를 위한 영문 공시 실시 현황

당사는 공시대상 기간 중 별도의 거래소 영문공시 및 별도의 영문 IR자료 등을 회사 홈페이지 IR 게시판에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중요한 공시내용은 회사 홈페이지 IR 게시판을 통해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 공정공시 실시 현황

당사는 공시대상 기간 사업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까지 공정공시를 실시하지 않았으나, 향후에는 주주와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과 기업정보를 적시에 공정하게 제공하기 위해 공정공시를 실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

당사는 최근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바가 없습니다.

(세부원칙 2-②) 기업은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 운영하여야 한다.

(7)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관련 내부통제장치 현황 등

당사는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의 사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절차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사회 규정 및 상법에서 이사회 승인사항으로 정한 주요 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를 이사회 의결 대상으로 정하여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 화신 출자내역

회사명	구분	소재지	지분율	자본금 (백만원)
Hwashin Automotive India Private Limited	종속회사	인도	100%	72,792
Beijing Hwashin Automobile Parts Co., Ltd.	종속회사	중국	100%	11,894
Hwashin America Corporation	종속회사	미국	100%	19,623
Hwashin Fabricante de Pecas Automotivas LTDA.	종속회사	브라질	100%	85,530
(주)이노빌	종속회사	대한민국	97.3%	4,153
Hwashin BHAP (Cangzhou) Automotive Parts Co., Ltd.	공동회사	중국	26%	25,225
Hwashin BHAP (Chongqing) Automotive Parts Co., Ltd.	공동회사	중국	26%	14,899

(핵심원칙 3) 이사회 기능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세부원칙 3-①)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3. 이사회

1) 이사회 기능

(1) 효과적인 업무수행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

당사는 이사의 수, 이사의 선임, 사외이사의 자격 등 이사회에 구성과 관련한 사항 및 이사의 직무 권한 책임, 이사회 소집과 결의 방법 등 이사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정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기타 이사회 운영 및 권한의 위임을 위하여 이사회 규정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이사회 심의 의결사항

당사 이사회는 회사의 최고 상설 의사결정 기관으로서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회사 운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며, 대표이사

선임 및 이사, 경영진의 직무집행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의 구체적인 역할은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서 정하고 있으며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법상의 의결사항

- 주주총회의소집
- 경영보고서의승인
-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승인
-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 지점의 설치, 이전 또는 폐지
- 신주의 발행
- 사채의 모집
- 준비금의 자본전입
- 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 이사의 겸업 및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의 승인
-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과 해임
- 주식매수선택권부여의 취소

○회사경영에 관한 중요사항

-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 사업의 계획과 운영에 관한 사항
- 회사의 예산, 결산
- 통상적인 상거래행위범위를 넘는 차입, 채무의 보증, 주요 재산의 취득 및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 국내외 주요 신규투자계획
- 해외증권의 발행
-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
- 자율준수관리자의 임명

○기타 법령 또는 정관, 주주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및 대표이사가 회사 운영상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이사회에 부의하는 사항

(3) 이사회 권한 위임 관련

당사는 의사결정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도모하기 위해 상법, 정관 및 이사회규정에 의거 이사회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의 제안, 대표이사의 선임과 해임,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과 해임,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 일정 범위 내 권한을 대표이사 또는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부원칙 3-②)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비상시 선임정책 포함)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하여야 한다.

(4)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관련

최고경영자는 당사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지식을 기반으로 회사에 확고한 비전을 제시하고 경영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리더십과 전문성 또한 겸비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사회에서는 회사와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회사를 경영하고, 효율적으로 당사의 핵심가치를 실행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후보를 사내이사 후보로 추천하고 있으며,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따라 대표이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정관에 따라 정해진 순서로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두고 있습니다.

(세부원칙 3-③) 이사회는 내부통제정책(리스크관리, 준법경영, 내부회계관리, 공시정보관리 등)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하여야 한다.

(5) 리스크 관리 정책 및 운영방향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별도의 리스크 관리 위원회 및 전담팀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사 관리본부에서는 전사 경영지표 등 매월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발견된 리스크는 경영진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6) 준법경영을 위한 정책 및 운영현황

당사는 준법, 윤리경영을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필수 경영철학으로 인식하고 있고, 전략기획

본부에서는 자율준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 법무관련 업무 경력 10년 이상의 준법지원인을 선임하여 2014년부터 준법지원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7) 내부통제정책 관련

당사에서는 내부통제정책과 관련하여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이사회와 감사위원회 승인을 거쳐 제정하였으며, 전담부서인 내부회계감사팀을 설치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부회계관리 규정에 따라 사업연도 종료 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내부회계관리자가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으며, 이후에 감사위원회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를 승인하여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보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8) 공시정보관리규정 관련

당사에서는 공시정보관리규정(2019.12.31 개정)을 이사회 승인을 거쳐 제정하였으며, 해당 규정을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시업무 전반은 관리본부 산하 내부회계감사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핵심원칙 4)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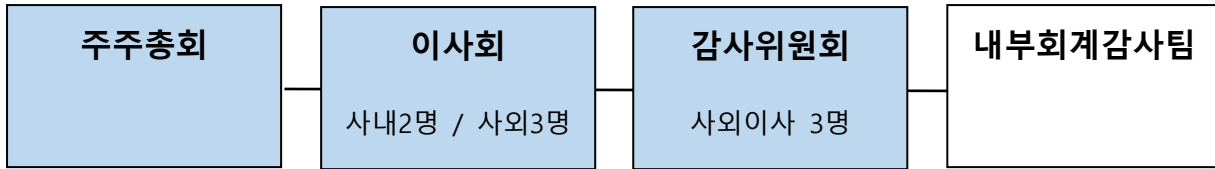
(세부원칙 4-①) 이사회는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2) 이사회의 구성

(1) 이사회의 구성 및 이사 선임

당사 이사회는 3명 이상으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구성되도록 정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3명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회 내 위원회로는 감사위원회가 있으며,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지원은 내부회계감사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 이사회관련 조직도



※ 이사회 구성 현황

구분	성명	직책	성별	임기 만료일	전문분야	주요 경력
사내 이사	정서진	대표이사	남	2022.03.20	경영총괄	고려대학교 경영학 졸업 미 Univ. of Rochester MBA (주)화신, (주)화신정공 대표이사 사장
	장의호	대표이사	남	2022.03.20	제조총괄	前 (주)화신 미국법인 법인장 (주)화신 대표이사 부사장
사외 이사	박경환	감사위원 대표	남	2022.03.20	법무	고려대학교 법학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 제21기 사법연구원 수료 대구지방공정거래협의회 자문위원
	김영석	감사위원	남	2022.03.20	기계공학	한양대학교 기계공학 졸업 KOBED대학 대학원 박사 경북대학교 기계공학부 교수
	배성호	감사위원	남	2022.03.20	회계감사	고려대학교 경영학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북대학교 회계학 교수

※ 이사회 내 위원회 구성

위원회	성명	직책	구분	겸임	주요 역할
감사 위원회	박경환	대표위원	사외이사	-	- 이사 및 경영진의 업무 감독 - 외부감사인 선정에 대한 승인 - 그 밖에 감사업무와 관련하여 정관 또는 감사위원회 직무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김영석	위원	사외이사	-	
	배성호	위원	사외이사	-	

(세부원칙 4-②)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2) 이사회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 확보를 위한 기업정책

당사의 이사는 상법 제382조 제3항, 제542조의8 제2항 등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하고 투명한 사외이사 선임을 위하여 경영, 법무 및 산업관련 기술 등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자 중에서 선임하고 있습니다.

당사 사내이사의 경우 이사회에서 후보에 대한 자격 및 경력 등을 검토하여 주주총회에 추천할 후보를 선정하고 있으며, 사외이사의 경우 상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자격 요건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를 사외이사로 선임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주주총회에 후보자를 상정하고 있으며, 사외이사 선임시 회사와의 독립성 여부, 법령상 자격요건 등을 포함한 '사외이사 자격요건 적격 확인서'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세부원칙 4-③)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이사회후추천위원회 설치여부 및 구성 현황

당사는 이사회후추천위원회 설치 의무법인이 아니므로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해당 위원회는 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3명으로 사외이사가 60%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4) 주주에 대한 이사 후보자 정보 제공

당사는 주주에게 사외이사를 포함한 이사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기 위하여 후보자의 상세 이력, 후보추천 사유, 독립성 확인 내용, 겸직 현황, 체납 사실,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등을 주주총회 2주 전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 최근 주주총회 시 제공된 이사 후보자관련 정보

정보제공일	주주총회일	후보자	정보제공 내역
2019. 3. 6*	2019. 3. 21	정서진 사내이사	- 후보자 주요 경력사항 - 독립성 및 이해관계 여부 - 겸직 현황
		장의호 사내이사	
		김태준 사내이사	
		박경환 사외이사	
		김영석 사외이사	
		배성호 사외이사	

* 주주총회 2주 전 '주주총회소집공고'를 통해 이사 후보자에 대한 사항을 제공하였습니다.

(5) 집중투표제 채택 여부

당사는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집중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법 제542조의4에도 불구하고, 전체 주주에게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우편 발송을 통해 공지하고 있으며, 주주들이 충분한 기간 동안 의안을 검토할 수 있도록 주주총회 2주 전에 '주주총회소집통지'와 주주총회 1주 전에는 감사보고서와 사업보고서를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공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법 제562조의6에 의거하여 기준 요건을 갖춘 주주의 주주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세부원칙 4-④)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아야 한다.

(6)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 방지 정책

당사는 별도의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이사는 후보 추천 이전에 상법 등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사전 확인하고 있으며, 이사회에서는 해당 이사의 선임 배경뿐 아니라 최대주주와의 관계 및 최근 거래내역, 신규 임원 선임 시 징계 이력 또한 확인하였습니다.

이사회가 의결하여 횡령, 배임 등의 법령위반 행위와 기타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한 제재를 제고하는 등 임원 선임에 있어 기업가치 제고를 위하여 종합적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선임 후에도 당사의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거나, 동종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무한책임 사원이나 이사가 될 수 없습니다.

(7)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로 확정판결을 받은 임원의 선임 여부

당사는 과거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로 확정판결을 받은 자를 이사로 선임한 사실이 없습니다. 또한 임원이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해당 재판 결과가 확정되면 그 구체적 내용과 사내 상벌 규정 등 종합적 판단으로 해당 임원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단, 재판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기업가치 훼손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필요할 경우에는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8) 집행임원 도입 여부

당사는 현재 집행임원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사회 및 대표이사를 통해 의사결정,

감독 및 집행에 대한 권한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며 지원부서를 통해 보다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9) 임원현황

성명	성별	출생년월	직위	등기여부	직책
정서진	남	1968년 02월	대표이사	등기임원	대표이사 사장
장의호	남	1959년 08월	대표이사	등기임원	대표이사 부사장
김영석	남	1957년 09월	사외이사	등기임원	사외이사/감사위원
박경환	남	1963년 01월	사외이사	등기임원	사외이사/감사위원
배성호	남	1978년 08월	사외이사	등기임원	사외이사/감사위원
박현석	남	1965년 10월	부사장	미등기임원	미국법인 부사장
박윤규	남	1957년 08월	전무이사	미등기임원	인도법인 법인장
류경호	남	1961년 07월	상무이사	미등기임원	예산공장 공장장
이정수	남	1961년 05월	상무이사	미등기임원	연구개발부문장
한영섭	남	1961년 11월	상무이사	미등기임원	브라질법인 법인장
이택재	남	1962년 11월	상무이사	미등기임원	품질부문장
안종록	남	1962년 01월	상무이사	미등기임원	영업개발부문장
김태용	남	1974년 02월	상무이사	미등기임원	전략기획본부장
이병응	남	1966년 05월	상무이사	미등기임원	사업개발부문장
이신우	남	1960년 10월	이사	미등기임원	창주, 충청법인 법인장
김영돌	남	1962년 09월	이사	미등기임원	미국법인 법인장
박병철	남	1962년 05월	이사	미등기임원	신차품질팀장
정영진	남	1964년 11월	이사	미등기임원	관리본부장
김성태	남	1964년 10월	이사	미등기임원	인도법인 담당
전재학	남	1968년 07월	이사	미등기임원	북경법인 법인장
이인식	남	1969년 04월	이사	미등기임원	전략영업팀장
강성만	남	1965년 08월	이사	미등기임원	노경협력실장
공유철	남	1969년 10월	이사	미등기임원	베트남법인 법인장
이창연	남	1968년 08월	이사	미등기임원	기술영업팀장
문기준	남	1965년 03월	이사	미등기임원	해외설계팀장
이준호	남	1964년 10월	이사	미등기임원	영천공장 공장장
김연규	남	1966년 06월	이사	미등기임원	대형설계팀장
김해용	남	1964년 02월	이사	미등기임원	차체기술팀장

(핵심원칙 5) 사외이사의 책임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3) 사외이사의 책임

(세부원칙 5-①) 사외이사는 해당 기업과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기업은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사외이사의 과거 당사 재직경력 여부

당사 사외이사의 경우 상법 제382조 제3항, 제542조의8 제2항 등에 의거하여 당사 및 계열회사 재직여부에 대해 확인하고 있으며, 사외이사의 경력뿐 아니라 회사와의 독립성 여부 등 사전적으로 검토하여 추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당해 법인과의 최근 3개년 거래내역은 주주총회 소집공고 및 참고서류를 통하여 공시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 선임시 회사와의 독립성 여부, 법상 자격요건 등을 포함한 '사외이사 자격요건 적격확인서'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 최근 사외이사 선임일 기준 당사 및 계열회사 등과의 관계

성명	최근 3년간 재직여부	최근 3년간 거래내역
박경환	없음	없음
김영석	없음	없음
배성호	없음	없음

(세부원칙 5-②)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2)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관련

당사 별도의 타기업 겸직 허용 내부기준은 없으나 당사의 사외이사는 상법 제 542조의8 제2항에 의거하여 상장회사인 당사 외에 2개 이상 다른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로 겸직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외이사 본인의 겸직 여부에 대해서 확인하고 날인한 '사외이사 자격요건 확인서'를 사외이사 후보추천시에 한국거래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세부원칙 5-③) 기업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3) 사외이사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정책

이사회 규정에 의거하여 이사회 의안사항 중 특정분야의 자문을 위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자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규정상 이사회는 각 이사 및 경영진에 대한 관련 자료의 제출, 조사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대표이사로 하여금 다른 이사 또는 임직원의

업무에 대하여 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핵심원칙 6) 사외이사의 활동 평가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의 활동내역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지급 및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세부원칙 6-①) 사외이사의 평가는 개별 실적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평가결과는 재선임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4) 사외이사 활동의 평가

(1) 사외이사 평가 개별 실적 근거 수행 여부

사외이사 평가 실시 여부 및 실시하는 경우 평가의 공정성 확보 방안, 구체적 평가방법 및 규정 등 당사는 현재 사외이사에 대해 명문화된 평가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외이사의 참석률 및 의사결정 기여도, 전문가로서의 효과적인 자문 제공 여부 등의 평가 절차를 마련하여 재선임 여부 및 이사 보수 산정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세부원칙 6-②) 사외이사의 보수는 평가 결과,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2) 사외이사의 보수

① 주식매수선택권 등을 포함하는 보수 정책과 해당 정책의 수립배경, 구체적 보수 산정기준 등

- 사외이사 보수 정책: 현재 명시된 사외이사 보수 정책은 없으며 사외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의거하여 사외이사를 포함한 이사 보수 한도를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하고, 그 세부 집행은 이사회에 위임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급내역은 매 분기 정기보고서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②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시 수량, 행사조건 등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사외이사 보수가 평가 결과,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으로

결정되는지 여부

당사의 사외이사 보수는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현재 명시적인 규정이 부재함을 보완하기 위해 향후 보수 정책 및 평가 기준을 정립하는 것에 대해 검토할 예정입니다.

(핵심원칙 7) 이사회 운영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세부원칙 7-①)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이사회 권한과 책임, 운영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5) 이사회 운영

(1) 정기 이사회관련 규정 현황

당사의 이사회 규정상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하며, 정기 이사회는 매 분기 개최하고, 임시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는 의장이 소집하며, 회의일 1일전까지 각 이사에게 개최시기, 장소 및 의안을 통지해야 합니다. 단,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안,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사에서는 이사회를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사업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까지 정기/임시 이사회 개최 내역 및 충분한 시간 전에 소집통지 여부는 다음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 사업연도 이사회 개최 내역

회차	개최일자	의 안 내 용	가결여부
1	2020.01.13	제 16 회 무보증 사모사채 발행의 건 - 원화 50 억원	가결
2	2020.01.31	제 17 회 무보증 사모사채 발행의 건 - 원화 50 억원	가결
3	2020.02.05	제 45 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결
4	2020.02.11	중국 총칭 현지법인 채무보증의 건 - 306 만유로 / 신한은행 중경분행	가결
5	2020.02.14	제 45 기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결
6	2020.02.25	제 45 기 정기주주총회 회의목적사항	가결

7	2020.02.26	제 18 회 무보증 사모사채 발행의 건 - 원화 50 억원	가결
8	2020.03.17	수출이행자금대출 차입의 건 - 200 억 / 한국수출입은행	가결
9	2020.03.17	수출성장자금대출 차입의 건 - 1,000 만달러 / 한국수출입은행	가결
10	2020.03.24	브라질 현지법인 채무보증의 건 - 1,000 만달러 / 한국수출입은행	가결
11	2020.04.08	브라질 현지법인 채무보증의 건 - 348 만 헤알 / 우리은행	가결
12	2020.04.17	기술신용대출 차입의 건 - 100 억 / 우리은행	가결
13	2020.04.28	무역금융 차입의 건 - 200 억 / 국민은행	가결
14	2020.04.28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협약의 건	가결
15	2020.04.28	준법지원인 선임의 건	가결
16	2020.05.15	제 19 회 무보증 사모사채 발행의 건 - 원화 50 억원	가결
17	2020.05.20	제 20 회 무보증 사모사채 발행의 건 - 원화 200 억원	가결
18	2020.05.20	브라질 현지법인 추가 출자의 건 - 300 만달러	가결
19	2020.05.26	인도 현지법인 채무보증의 건 - 2 억 5 천 8 백만 루피 / 우리은행	가결
20	2020.05.26	인도 현지법인 채무보증의 건 - 1,104 만달러 / KEB 하나은행	가결
21	2020.05.26	인도 현지법인 채무보증의 건 - 420 만달러 / KEB 하나은행	가결
22	2020.05.26	산업운영자금대출 차입의 건 - 100 억원 / 한국산업은행	가결
23	2020.06.17	제 21 회 무보증 사모사채 발행의 건 - 원화 50 억원	가결
24	2020.06.23	브라질 현지법인 채무보증의 건 - 800 만달러 / 한국산업은행	가결
25	2020.06.25	수출환어음매입한도 차입의 건	가결
26	2020.06.25	인도 현지법인 채무보증의 건 - 1,000 만달러 / SC 은행	가결
27	2020.06.25	인도 현지법인 채무보증의 건 - 650 만달러 / SC 은행	가결
28	2020.07.09	브라질 현지법인 채무보증의 건 - 1,000 만달러 / 한국수출입은행	가결
29	2020.07.09	대구은행 운전자금 차입의 건 - 원화 200 억원	가결
30	2020.07.09	대구은행 일반자금 차입의 건 - 원화 200 억원	가결
31	2020.07.16	중국 창주 현지법인 자본금 추가 출자의 건 - 286 만달러	가결
32	2020.07.23	수출성장자금대출의 건 - 800 만달러 / 한국수출입은행	가결
33	2020.09.02	중국 북경 현지법인 채무보증의 건 - 4,320 만 위안 / 하나은행	가결
34	2020.10.15	한국수출입은행 수출성장자금대출 차입의 건	가결
35	2020.10.20	중국 창주 현지법인 채무보증의 건 - 153 만유로 / 신한은행	가결
36	2020.11.27	인도 현지법인 채무보증의 건 - 2 억 4 천만루피 / 우리은행	가결
공시 대상기간 이후			
1	2021.01.06	제 22 회 무보증 사모사채 발행의 건 - 원화 250 억원	가결
2	2021.01.15	베트남 현지법인 설립의 건	가결
3	2021.01.21	중국 북경 현지법인 채무보증의 건 - 5,400 만 위안 / 신한은행	가결
4	2021.02.10	제 46 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결
5	2021.02.19	제 46 기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결
6	2021.03.03	제 46 기 정기주주총회 회의목적사항	가결
7	2021.03.03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평가 보고	가결
8	2021.03.03	2021 년 안전보건관리 계획보고 및 승인	가결

(세부원칙 7-②)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2) 이사회 의사록 작성 및 보존

당사는 매 회의마다 의안에 대한 내용이 의사록에 포함되도록 상세하게 작성하여 원본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3) 개별 이사 출석 내역 및 찬성률

당사 이사의 출석 내역 및 찬성률은 매 회의마다 집계하여 그 결과를 정기보고서를 통해 외부에도 공시하고 있으며, 각 이사별 의안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의사록에 작성하고 있습니다.

개별 이사의 이사회 출석 및 찬성률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시대상기간 이사의 이사회 출석 및 찬성률

회차	개최일자	사내이사		사외이사		
		정서진 (출석률: 100%)	장의호 (출석률: 88.9%)	박경환 (출석률: 100%)	김영석 (출석률: 100%)	배성호 (출석률: 97.2%)
1	2020.01.13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	2020.01.31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3	2020.02.05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4	2020.02.11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5	2020.02.14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6	2020.02.25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7	2020.02.26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8	2020.03.17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9	2020.03.17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10	2020.03.24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11	2020.04.08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12	2020.04.17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13	2020.04.28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14	2020.04.28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15	2020.04.28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16	2020.05.15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불참
17	2020.05.20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18	2020.05.20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19	2020.05.26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0	2020.05.26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1	2020.05.26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2	2020.05.26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3	2020.06.17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4	2020.06.23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5	2020.06.25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6	2020.06.25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7	2020.06.25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8	2020.07.09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9	2020.07.09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30	2020.07.09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31	2020.07.16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32	2020.07.23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33	2020.09.02	찬성	불참	찬성	찬성	찬성
34	2020.10.15	찬성	불참	찬성	찬성	찬성
35	2020.10.20	찬성	불참	찬성	찬성	찬성
36	2020.11.27	찬성	불참	찬성	찬성	찬성
공시 대상기간 이후						
1	2021.01.06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	2021.01.15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3	2021.01.21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4	2021.02.10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5	2021.02.19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6	2021.03.03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7	2021.03.03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8	2021.03.03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핵심원칙 8) 이사회 내 위원회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세부원칙 8-①)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되 감사위원회와 보상(보수) 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6) 이사회 내 위원회

(1)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 현황

당사의 이사회 내 위원회는 총 1개로 감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는 2017년 3월 23일 제42기

정기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사외이사 3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원칙 8-②)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이사회 내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과 관련 명문 규정 여부

당사의 이사회 내 위원회인 감사위원회와 관련한 규정은 '감사위원회 규정(2019.12.31 개정)에서 명문화하여 준수하고 있습니다.

(3) 위원회의 결의사항 이사회 보고 여부

감사위원회의 결의사항은 '감사위원회 규정' 제16조에 의거하여 의사록이 작성되고 있으며, 그 내용 또한 제14조에 의거하여 분기별로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핵심원칙 9) 내부감사기구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세부원칙 9-①)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4. 감사기구

1) 감사위원회

(1) 감사위원회 구성 현황

당사의 내부감사기구는 감사위원회이며, 감사위원회 위원은 정관 및 감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로 선임됩니다.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사외이사의 수가 위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위원 중 1인 이상은 관계법령에서 정한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3인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외이사를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고, 위원 중 1인 관계법령에서 정한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로 구성하고 있어 전문성 또한 확보하고 있습니다.

당사 감사위원회의 구성 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위원회 구성**

성명	직책	구분	주요 경력	비고
박경환	대표위원	사외이사	고려대학교 법학 졸업	-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 제21기 사법연수원 수료 대구지방공정거래협의회 자문위원	
김영석	위원	사외이사	한양대학교 기계공학 졸업 KOBED대학 대학원 박사 경북대학교 기계공학부 교수	-
배성호	위원	사외이사	고려대학교 경영학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북대학교 회계학 교수	공인회계사 (회계전문가)

(2) 감사위원회 운영 관련

당사는 감사위원회의 운영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 등을 규율하는 감사위원회 규정을 제정하였고 해당 규정에 따르면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되어야 하고, 위원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감사위원회는 회계와 업무의 감사, 법령·정관에 정해진 사항 및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결의하며 이사와 경영진이 합리적 경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이사와 경영진의 직무 집행을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주요 직무와 권한으로 두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관계 임직원 및 외부감사인을 회의에 참석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구체적인 감사위원회의 역할을 감사위원회 규정에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청구
- 주주총회의안 및 서류에 대한 진술

○이사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 이사회에 대한 보고의무
- 감사보고서의작성, 제출
- 이사의 행위에 대한 유지 청구
- 이사에 대한 영업 보고 청구
-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감사에 관한 사항

-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 조사
- 자회사의 조사
- 이사의 보고 수령
- 이사와 회사간의 소 대표
- 소수주주에 의한 이사에 대한 제소 요청시 소 제기 결정 여부
- 외부감사인 후보의 평가결과 및 외부감사인의 선임
- 감사 계획 및 결과
- 중요한 회계처리 기준이나 회계추정변경의 타당성 검토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에 대한 평가
-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및 증권선물위원회와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 사전제출의무 준수 여부 확인
- 감사결과 시정 사항에 대한 조치 확인
- 내부감사부서 책임자의 임면에 대한 동의
-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하는 중요한 사실의 보고 수령
-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사실의 보고 수령

(3) 감사위원회 교육 및 외부 전문가 자문 지원 관련

당사는 보고서 작성대상기간 중 감사위원회를 대상으로 외부 전문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교육방안을 검토 진행중으로 향후에는 연간 감사위원회 운영계획에 따라 감사위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당사 감사위원회는 정관 및 감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필요시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 등의 도움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경영진 부정행위 등에 대한 조사절차 및 중요 정보 접근성 관련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 규정에 의거하여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요한 사실 및 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 등의 보고를 수령하였을 경우에는 위원회에 부의할 수 있으며,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임직원 및 외부감사인을 회의에 참석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상 필요한 경비는 당사 정관에 의거하여 주주총회결의로 정한 지급한도내에서 이사회가 지급 여부 및 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소집권자인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각 위원이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히고 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집 요구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청구한 의원이 소집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 사항과 소집 이유를 서면에 적어 소집권자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에도 불구하고 소집권자가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5) 감사위원회의 지원 조직

당사 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감사팀에서 지원담당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 보고 및 심의 안건 자료 준비, 위원회 운영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내부회계감사팀은 관리본부소속으로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된 부서는 아니나, 당사 감사위원회 위원 전원이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어 이사회·주주총회와의 업무연계성, 경영실적 보고 및 감사업무지원 등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설치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기준으로 내부회계감사팀의 담당 구성원은 총 4명이며 구성원들은 관리본부소속으로 관련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보고사항 중 경영실적관련 사항은 경영진 확인 후에 감사위원회에 보고되며, 별도로 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분기별 최소 1회 이상 경영진을 배제한 상태에서 대면 회의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 감사위원회의 보수

당사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당사는 정관에 의거하여 사외이사 보수를

포함한 이사 보수 한도를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하고, 그 세부 집행은 이사회에 위임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급내역은 매 분기 정기보고서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세부원칙 9-②)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7) 감사위원회 활동내역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매 분기별 개최하며,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규정에 명시된 주주총회관련 사항의 의안 절차에 따라 '주주총회 보고 및 부의 안건'이 심의·의결되었으며, 분기별 1회 외부감사인과의 대면회의, 외부감사인 선임 등 안건이 심의/보고되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종료 후에는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사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회가 실시한 감사에 관하여는 감사록을 작성하고,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 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한 다음 감사를 실시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고 있습니다. 각 위원회 회차별 의안 내용, 위원참석여부 및 가결 여부, 출석 내역 등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시 대상기간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 및 출석률

회차	개최일자	의안 내용	박경환 (출석률: 100%)	김영석 (출석률: 100%)	배성호 (출석률: 100%)
1	2020.03.19	제 45 기 정기주주총회	참석	참석	참석
2	2020.04.29	1 분기 정기 감사위원회	참석	참석	참석
3	2020.08.05	2 분기 정기 감사위원회	참석	참석	참석
4	2020.11.04	3 분기 정기 감사위원회	참석	참석	참석
5	2020.11.26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운영 검토 및 평가	참석	참석	참석
공시 대상기간 이후					
1	2021.02.10	4 분기 정기 감사위원회	참석	참석	참석
2	2021.03.03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평가 보고	참석	참석	참석
3	2021.03.30	제 46 기 정기주주총회	참석	참석	참석

(핵심원칙 10) 외부감사인

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주 등 그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 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 수행하여야 한다.

(세부원칙 10-①)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 선임 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2) 외부감사인

(1) 외부감사인 선임 및 운영

당사는 보고서 작성대상 기간 중 외부감사인 선임과 관련 감사위원회를 2019년 11월 28일 개최하여 2020년 사업연도와 연속하는 2개 사업연도의 외부감사인으로 '대주회계법인'을 선임할 것을 승인하였습니다.

'대주회계법인'은 지정감사제도에 의하여 선정된 것으로 해당 감사위원회에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5항에 의거 외부감사인의 감사보수와 시간, 감사에 필요한 인력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정하였습니다.

당사는 외부감사인 또는 그 자회사를 통해 경영자문 등 비감사용역을 제공받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가 외부감사인을 통해 진행하고 있는 비감사용역에 대해서는 전문성과 시스템 이해도를 평가하여 선정하고, 그 진행 사실이 있는 경우 정기보고서를 통해 공시하고 있습니다.

(세부원칙 10-②)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실기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2)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 간의 의사소통 현황

당사 외부감사인은 분기별 최소 1회 이상 사외이사들만 구성된 감사위원회 회의에 참여하여 외부감사관련 주요 사항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해당 회의에서는 연간 감사 계획, 공정가치 평가 및 손상 검토 등을 포함한 기말감사결과, 분기별 검토결과, 핵심 감사 항목 검토 내역,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등에 대한 보고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에 의거하여, 외부감사인은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요한 사실, 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 시 감사위원회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며, 해당 내용은 감사위원회에서 부의 및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공시 대상기간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의 논의 내역

구분	일자	참석자	방식	주요 논의 내역
1	2020.04.29	감사위원회 3인, 업무수행이사 1인	대면회의	감사계약 단계 커뮤니케이션 및 1분기 검토 결과 보고
2	2020.08.05	감사위원회 3인, 업무수행이사 1인	대면회의	반기 검토 결과 보고
3	2020.11.04	감사위원회 3인, 업무수행이사 1인	대면회의	3분기 검토 결과 보고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진행 상황
4	2021.02.24	감사위원회 3인, 업무수행이사 1인	대면회의	핵심감사사항 등 중점 감사사항 결과 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결과 보고